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고시 제정 · 공포 안내

- 고 시 : 제2009-160호
- 공포일자 : 2009. 8. 3
- 담당부처 : 전력산업과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http://www.mke.go.kr)), 협회([www.keea.or.kr](http://www.keea.or.kr))

## ◎ 제정이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지침을 지식경제부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감리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 주요사항

- 구성(제6장 67조) : 일반사항, 공사착공단계, 공사시공단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관련, 기성 및 준공검사관련, 시설물의 인수·인계관련 감리업무
- 적용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 PQ대상공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2의2」 ⇒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10,000㎡이상 건축물
- 주요내용
  - 공사 시공단계별 공사업자의 각종 서류제출기한 및 감리원의 검토·확인기간 설정
  - 공사단계별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출시기 설정
  -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공사착공 → 공사시행 →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인수·인계) 등

## ◎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9.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협회에서는 회원 및 감리업체(감리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개정건의(안)을 법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 하였으며, 동 고시 제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깊은 조달청, 한전 등 관련기관 및 이해당사자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의 의견 수렴

- ▶▶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http://www.keea.or.kr)/알림마당, 입법 및 개정)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578호
- 공포일자 : 2009. 6. 29
- 담당부처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481-7445)
- 전문참고 : 조달청(www.pps.go.kr)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지원 등을 위하여 우수 공동브랜드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보증서의 범위에 건설감리협회와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추가하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가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추가(안 제26조제1항제7호자목 신설)

- 1) 중소기업은 마케팅능력 부족 등으로 제품의 인지도가 낮아 초기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음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공동상표 중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3) 공동상표 개발·활용이 증진되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시장개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보증서 발급기관에 건설감리협회 및 소방산업공제조합 추가(안 제37조제2항)

- 1) 입찰보증금 등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이 동업자단체를 설립하여 보증업무를 개시하고 있는바, 이를 이 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함
- 3) 보증서 발급기관이 확대되어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의 보증서 발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 대가 지급기한 단축(안 제58조)

- 1)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물품 등의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 물품 등의 대가 지급기한을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서 청구일부터 5일 이내로 단축함
- 3)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라.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확대(안 제72조제3항)

- 1) 최근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2)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녹색국토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도록 하되,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3) 정부발주 공사에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009-663호
- 예고기간 : 2009. 7. 24 ~ 8. 13
- 담당부처 : 기술정책과(02-2110-837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http://www.mltm.go.kr))

## ◎ 제안이유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범사업 선정기준과 추진 절차를 마련하고,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 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R&D 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기준, 추진절차 마련
- 나. 일괄·대안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안내

- 부 령 : 제2009-633호
- 예고기간 : 2009. 7. 16~ 8. 7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02-2110-6203)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 개정이유

내진설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식과 설계·허가·공사 단계별 주요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중요도를 재분류하며 기술 발전에 따라 자주 변경될 수 있는 규칙의 기술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대폭이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축구조관련 용어변경 및 신설

- (1)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는 내력부분, 응력 등의 용어를 구조부재, 부재력 등으로 변경
- (2) 구조안전의 확인의 세부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항에서 사용되는 구조설계,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설계도서 등의 용어를 정의

### 나. 구조설계 원칙의 체계적 정립

- (1) 서술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구조설계의 원칙을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 다. 구조계산방법 및 설계하중 산정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기준으로 이관

- (1) 건축구조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기술적 내용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어 기술발전을 제도에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2) 설계하중의 산정방법 및 구조계산법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칙에서 기준으로 이관하고 규칙에서는 구조계산법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다는 원칙과 설계하중의 종류 및 적용원칙 등을 규정

### 라.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 (1)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구조안전의 확인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구조 안전 확인 절차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함
- (2) 기존의 행정지침으로 시행되어 오던 “구조안전 확인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참조하여 구조안전의 확인을 위한 사항을 규정

- (3) 3층이상 5층이하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1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고 6층이상의 건축물은 별지 서식2호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서식을 작성하도록 함
- (4) 건축설계·허가·공사 단계별 구조안전 확인 사항으로 구조설계도서 작성 시의 기술적 기준, 허가 시 구조안전 확인서의 제출, 공사감리자의 구조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면과의 적합성 검토 등을 규정함

**마. 건축물의 중요도 조정**

- (1) 현행 건축물의 중요도 구분에는 분류기준에 맞지 않게 분류되어 있는 시설이나 재난 시 중요한 시설이나 포함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내진설계의 실효성이 저하됨
- (2)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던 15층 이상인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중요도 (특)에서 중요도 (1)로 조정하여 5층이상인 숙박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항목과 통합
- (3) 병원을 세분하여 수술시설 및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은 중요도(특)으로 분류하고, 그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중요도(1)로 구분
- (4)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하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등은 재난 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요도(1)에 추가
- (5)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중요도(1)로 구분
- (6) 중요도(1)에 분류되어 있는 3층 이상의 학교는 층수 등 규모 구분없이 전체 학교로 대상을 확대
- (7) 보통의 건축물에 비해 중요도가 낮은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등은 중요도(3)으로 신설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629호
- 공포일자 : 2009. 7. 16
- 담당부처 : 건축기획과(02-2110-620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itm.go.kr)

**◎ 제안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안 제18조 및 제28조제2항, 안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정기준 적용 완화(안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안 제40조제3항)

-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86조제2항제2호)

-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653호
- 공포일자 : 2009. 7. 30
- 담당부처 : 안전보건정책과(02-6922-0923)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 개정이유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시의 석면 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943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안 제8조의4)

- 1) 산재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 및 유해·위험 정도가 고려되지 않아 불합리한 면이 있었음
- 2) 공표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을 사업장별 유해·위험 정도가 반영되도록 확실적인 기준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연간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연간 상시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로 환산한 것)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장별 형평성을 고려함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안 제9조)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실질적인 총괄관리자로서 방문조사를 통해 선임 여부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임 시 노동부장관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옴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을 신고하도록 하는 대신에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요건(안 제26조의10)

- 1)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을 새롭게 정함

- 2) 산업안전·보건관련 훈련직종을 지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등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 있는 기관을 정함으로써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건축물 등 철거·해체 전의 석면조사 대상 등(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 1) 법률에서 석면 함유 여부 사전조사 의무 및 석면조사기관 지정제가 도입됨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 및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철거·해체하고자 하는 벽체 등의 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철거·해체작업 전 석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면적, 부피 또는 길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작업 전의 정확한 석면조사를 통하여 석면피해로부터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0조의7부터 제30조의10까지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의하여 석면해체·제거공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전문성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2) 철거·해체하려는 벽체재료, 바닥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퍼센트 기준으로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등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해체·제거를 하여야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 및 등록절차를 마련함
- 3) 석면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를 씻어낼 것으로 기대됨

**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근거 마련(안 제45조의4)**

- 1) 유해물질 취급사업장 중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및 필요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못하여 직업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2)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작업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안 별표 3)**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으로서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을 포함하여 선임하도록 함
- 3) 대형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 유권해석

## 이

전기설계 사무소에서 설계한 00프로젝트가 설계감리 대상이어서 설계도서를 설계감리 회사에 제출했는데 착공이후에 설계변경사항이 몇차례 발생 했습니다.  
착공이후 설계변경된 도서를 설계감리회사에 제출해서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시공감리자가 처리해야 하는지요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등)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설계감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이 위의 설계감리 대상 전력시설물이라면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며 그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감리자에게 설계감리를 받는 것이 타당(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당해 설계감리대상 전기설비이므로) 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03. 20)

## 02

예를들어 당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가 1건으로 발주하였으나 여러개의 단지(공구)로 분할되었었으며 각 단지(공구)별로 수변전실이 있음 또한 4개현장 모두 인접해 있음  
A 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1단지(1공구) 700호, A 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2단지(2공구) 700호  
A 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3단지(3공구) 700호, A 지구 아파트 전기공사 4단지(4공구) 700호  
상기내용으로 사업승인을 1건으로 받았다면 감리배치를 할때 4개의 단지를 1개의 현장으로 보고 2800세대를 기준

으로 감리를 배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의 단지를 각각의 현장으로 보고 3개현장 2100세대는 통합감리 기준으로 감리를 배치하고 나머지 현장은 별도로 감리를 배치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에서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감리대가와 감리원 배치인원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하므로 사업승인이 1건 이라면 감리원 배치도 1건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04. 03)

# 03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14조5항에 설계, 감리의 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관리 용역대가는 어디에서 만들고 어디에서 고시하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12조2항의1에 국가지방자치단체및정부투자기관등의 소속직원중이라 되어있는데 위와같은 기관중에 감리원이 없는단체와 소속직원중이라는 단어의 소속의 범위(예발주부서의 하위직원등)가 어찌되나요

-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58호)으로 고시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 용역대가는 전기사업법 소관사항이며, 현재 별도로 고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중 감리원 수첩을 받은 자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는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중 감리원 자격자가 없다면 제12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04. 04)

# 04

현재 당사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의거 자체감리를 시행중입니다.

- 보조감리원 변경신고서(인사이동)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5항에 의거 보조감리원 변경시 동등이상감리자를 배치하여야하는지, 발주자=감리자(발주자소속직원)일 경우 법적감리등급(초급이상)에 만족하는 감리자 배치가 가능한지여부 질의?

- 감리배치현황 및 진행상황 -

- 1) 착공당시 세대수(999호)에 의거 책임1인(특급), 보조 0.5인(특급)을 배치함(참고). 법적 감리원은? (특급1인, 초급0.5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3.
- 2) 책임인 배치기간('07. 11. 1~ '09. 6월), 보조인 배치기간(2008. 5. 14~ '09. 06월)동안 신고
- 3) 보조감리원 변경(특급→)초급) 진행중
- 4)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발주자에서 승인한 사항이여도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접수불가(책임과 보조감리원이 구분이안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5항
- 5) 협회는 질의답변결과에 따라 적용예정
- 6) 당사의견 : 책임감리원을 보조하는 보조감리원은 법적인월수를 충족하여 배치하되 보조감리원 자격등급은 현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법적등급을 만족하면 발주자가 판단하여 변경승인 가능하다 판단됨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5항에서 감리원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교체감리원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공고대상(PQ) : 공고당시 참여감리원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을 말함)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책임감리원은 자격가점 포함)
  2. 공고대상 이외의 대상 : 당초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인 등급을 가진 자(기술사자격을 포함)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감리가 “공고대상(PQ)”이라면 공고당시 보조감리원의 평가요소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등급, 경력, 실적을 만족하는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공고대상 이외의 대상”이라면 당초 배치계획상의 감리원과 동등 이상인 등급을 가진 자를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04. 07)

생활속 법령상식

임야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자신의 임야를 담보잡혀 돈을 차용하여 오라고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주었으나, 대리인이 본인 허락없이 임야를 매도한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임야를 되찾아 오기 힘들다.



글 | 박중복 변호사

**Q** 본인은 A에게 본인 소유 임야를 B에게 담보잡히고 돈 3,000만원을 빌려 오라고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건네 주었더니, A는 본인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임야를 B에게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 버렸다. 본인이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가?

**A**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귀하의 경우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므로 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기 힘들어 보인다.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이를 믿고 거래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A에게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건네 준 것은 귀하 소유 임야를 B에게 담보잡혀서 돈을 빌려 오라고 위임을 한 것이지, 이를 매도할 권한을 준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A가 위 인감도장 및 등기권리증을 이용하여 B와 귀하 소유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전하였다면, A는 귀하에게 배신행위를 한 것이지만 B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귀하보다는 B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B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귀하는 A의 행위, 즉 임야매도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귀하는 A의 대리권 남용 내지 배신행위에 대하여 A를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B에게 넘어간 임야의 소유권을 되찾아 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